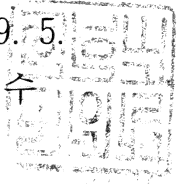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2361
번 호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달성군수



□ 제출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제출사유

-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을 역점적으로 추진.
-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인 현풍읍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본 안건을 마련하여 달성군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 활성화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개발에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변지역의 성장 및 확장으로 인구유입 요인이 낮고, 도심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됨
- 쇠퇴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

- 사업명 : 북적북적 백년시장 왓차지컬 드림마루
- 사업기간 : 2024 ~ 2027
- 대상지 : 현풍읍 원교1,2리 일원(159,000㎡)
- 사업비 : 288.08억원 (국 144.04 시 72.02 군 72.02)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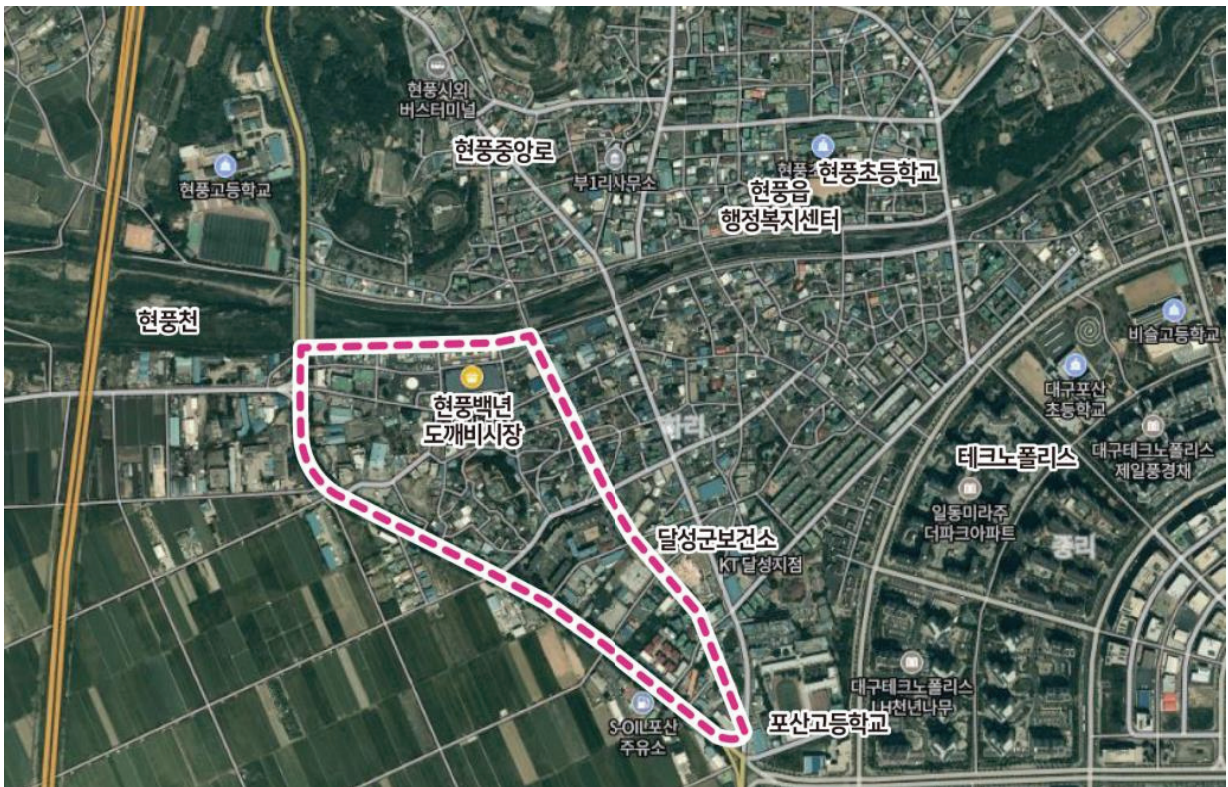
사업내용		세부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위치)	
마 중 물 사 업 H/ W	㉠ 지역특화 시설조성	드림-on파크 조성	어린이놀이터, AR·VR 교육체험, 주민휴게공간	21,728	원교 어린이공원
		소 계		21,728	
	㉡ 시 장 재 활 성 화	시장아카데미 운영	깨비쌤 문화교실	634	상가점포
		시장 환경개선	시장간판개선, 특화가로, 상가스마트빗물받이 설치	1,876	시장 주변골목
		소 계		2,510	
	㉢ 주 민 커 뮤 니 티 활 성 화	주민공동이용시설	생활체육실, 다목적실 등	1,823	원교1리 회관 신축
		도시재생거점시설	재생교육실, 문화교실 등	2,417	원교2리 회관 신축
		소 계		4,240	
	㉣ 계 획 수 립 및 성 과 관 리	활성화계획수립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180	
		종합성과지표 관리분석	종합성과지표 관리분석 용역	150	
소 계			330		
계		마중물사업 ㉠+㉡+㉢+㉣	28,808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22. 10.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예산 편성
- 2023. 0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시행
- 2023. 03. : 원교리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 2023. 05. : 원교리 주민협의체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05. :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상인회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07. : 국비 공모사업 1차 사전컨설팅
- 2023. 08. : 현풍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 2023. 09. : 국비 공모사업 2차 사전컨설팅
- 2023. 09. : 현풍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회의견 청취
- 2023. 09. : 국비 공모사업 신청
- 2023. 10. : 활성화계획 시·도평가(서면·현장·발표평가)
- 2023. 11. : 중앙평가 및 국비지원 타당성 검토(국토부)
- 2023. 12. :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 사업구역도



붙임

사업계획 구상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